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185호 | 2016년 6월 29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정 미 아*

1. 들어가며

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이 과학고나 특목고 입학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만연하다는 지적과¹⁾ 영재교육을 받았던 학생의 논문이 작년과 올해 표절 논란에 휩싸인²⁾ 점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영재교육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해 왔다.

현재 제3차 종합계획이 진행 중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에서의 양적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글에서는 제3차 종합계획의 내용 및 성과를 검토하고, 영재교육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제4차 종합계획에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제3차 종합계획의 수립과정 및 주요내용

종합계획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되고 있는 정책 계획이다³⁾.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 극대화를 비전으로 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재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영재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함에 따라 영재교육기관 조직체계와 교원 양성·임용 체계가 정비되었다⁴⁾.

제2차 종합계획은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하여 그동안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영재

1) 유덕영, 「영재교육 받으려고 학원行...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교육원」, 『동아일보』, 2016년 2월 25일자, 김민희, 「“영재교육에 영재가 없다”, 사교육 몸집 불리는 한국의 영재교육 모범생 교육으로 변질」, 『주간조선』, 2015년 4월 17일자.

2) 신선미, 「‘천재소년’ 송유근 새 논문도 표절 논란」, 『연합뉴스』, 2016년 5월 4일자.

3) 2002년 제1차 종합계획(2003~2007), 2007년 제2차 종합계획(2008~2012), 2013년 제3차 종합계획(2013~2017)이 마련·추진되었다.

4)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 진흥법 개선을 위한 연구』, 2012. 12, pp.25-28.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2년 제2차 종합계획이 완료되고, 2013년부터 적용된 제3차 종합계획은 2013년 10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세부 후속계획 중 하나로 발표되었다⁵⁾.

제3차 종합계획은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그 비전으로 하고,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확대,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의 5대 분야와 1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표 1]).

[표 1] 제3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5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1.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1) 영재교육 다양화 및 연계 활성화
	2)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
	3) 영재선발 방법의 타당성 제고
2.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4) 고교-대학 간 연계체제 강화
	5) 영재교육기관 다양화 및 효율화
	6) 영재교육기관 지원환경 개선
3.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7)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과정 제공
	8)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9) 영재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방식 개선
	10) 영재교육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
4.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11)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양화
	12)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개발
	13) 영재교육 교원 지원 환경 개선
5.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14) 행정 지원체제 효율화
	15) 영재교육 정보·교류지원 강화
	16)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화
	17) 영재교육 국제화

자료: 교육부,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2013. 10.

5) 교육부, 보도자료,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 발표」, 2013. 10. 4.

3. 추진 현황 및 성과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⁶⁾ 첫째, 2015년 약 11만 명의 영재교육대상자 중 수학과 과학 이외 분야의 영재교육대상자 비율이 18.8%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인문사회, 예술, 체육 등에서 영재교육대상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부터 제3차 종합계획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계획이 추진되면서 양적인 면에서 큰 성장이 있었고 영재교육 분야도 더욱 다양해졌다([표 2]).

[표 2] 종합계획 추진 결과

구분	2007년	2012년	2015년
영재교육대상자(명)	46,006	118,377	110,053
영재교육기관(개)	663	2,868	2,538
수학·과학 이외의 영재교육 분야(%)	17.4	16.8	18.8

자료: 교육부,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3, pp.13-23, 교육부, 제출자료, 2016. 5. 중 관련 자료를 재구성.

사회적 배려 영재교육대상자 수는 2015년 기준 4,190명으로 전체 영재교육대상자의 3.81%인데, 제3차 종합계획은 2017년 10%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를 더욱 추진하고 소외계층 영재를 고려한 선발과 진단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째, 영재선발 방법으로 교사 관찰·추천제를

6) 교육부, 제출자료, 2016. 5.

7)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로 구분된다. 고등학교급인 영재학교는 정규교육 과정이며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은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해 정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영재교육원은 시·도 교육청, 대학, 연구원,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영재학급은 초·중·고 각급 학교 학급단위 및 지역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입하였다.

교사 관찰·추천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의 장기 관찰과 이를 토대로 한 추천에 의해 학생의 재능을 발굴·추천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필기 시험 위주로 선발할 경우 소위 사교육기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기준 전체 영재교육기관의 84.6%가 교사 관찰·추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애초 계획한 2017년 70%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다.

셋째, 교육부는 교원 양성단계에서 영재교육 교직과목 이수 강화 등을 실시하였고 교원 현직 단계에서는 경력 단계별로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교수인력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소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위하여 파견 가능한 인력을 매칭하는 사업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보상체계는 가산점 반영, 연수기회 제공, 포상 확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전보가산점 부여, 국외연수대상자 우선 선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2016년부터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 평가지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기관 파견근무 기간을 3년 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정규 수업시수 경감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교육부는 2017년까지 구체적인 방침 및 훈령을 제정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넷째,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확대·개편하였고,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상 영

재성 발달기록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재교육 이력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의 영재교육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 영재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영재교육재원 확대 및 다양화 과제에 대해 교육부는, 영재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2017년까지 지방비 및 민간 재원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본 제3차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제4차 종합계획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양적 확대에 관한 점검이다. 영재교육대상자는 2003년 약 2만 명에서 2015년 약 11만 명으로 12년간 5.5배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 대비 영재교육대상자 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 영재교육대상자는 전국 학생 수의 1.81%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영재교육대상자의 양적 확대가 새로운 영재의 지속적인 발견과 개발인지 또는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영재가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교육 및 관찰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성의 발현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저학년의 영재들을 또래의 학생과 구분하여 별도의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

둘째,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재성의 개념을 정책 시행 시 구체화하고 그 측정도구를 개선함으로써 영재 선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대상자, 영재교육, 영재교육특례자 등 영재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으나 종합계획의 추진과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영재성의 개념 정립과 측정은 영재교육대상자의 다양화 정책과도 연계된다. 영재교육대상자 중 수학·과학 분야의 비율이 전체의 80%를 상회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3차 종합 계획에서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영재성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학·과학 분야와 달리 영재성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단기간의 수치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관찰·추천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가 필요하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된 교사관찰·추천제는 애초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영재성의 준거가 모호하여 과대 추천하거나 가시적인 특성 위주로 추천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교사관찰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영재 관련 연수나 설명회를 강화하는 등 관찰자인 교사가 영재성의 발현을 관찰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관찰·추천제에서 활용되는 교사 추천서, 교사 체크리스트 등 영재성 관찰 자료가 영재성을 다각도에서 측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종합계획 수립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실시된 제3차 종합계획은 실시 연도인 2013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실시 연도의 하반기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영재교육 진흥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차수 종합계획의 실시 연도 이전에 추진실적의 점검 및 보완점에 관한 검토가 완료되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미국과 유럽 각국은 영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차에 걸쳐 시행하여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영재교육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도모한 제3차 종합계획의 추진과정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적·질적인 측면의 개선을 위한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재교육을 통하여 창의성, 인성, 융합적 사고 능력을 모두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8) 제19대 국회에서는 영재학교가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운영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영재학교 입학경쟁을 방지하는 등 영재학교가 효과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13015호, 임기만료 폐기).